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가합106744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유

담당변호사 전원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피플

담당변호사 성지경

변 론 종 결 2022. 10. 27.

판 결 선 고 2023. 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15,458,118원 및 그 중 425,107,732원에 대하여는 2019.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90,113,286원에 대하여는 2019. 11. 30.부터 2021. 2.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등

- 1) 원고는 조명기구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소외 주식회사 B(2020. 3. 31. 주식회사 C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B’라 한다)는 스튜디오 조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 2) 소외 B는 2014. 6. 13.경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 흡수합병되었다. 그러나 E 등 소외 B의 채권자들이 2014. 10. 10. D를 상대로 위 흡수합병의 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에 따라(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206972), 같은 법원은 2015. 1. 7. 위 흡수합병을 무효로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 3) 한편, E는 2009. 5. 4. ‘F’이라는 상호로 방송장비 도매, 조명무대 설치 등의 영업을 하다가, 2014. 10. 8. 스튜디오 조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를 설립하였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

소외 B는 2014. 5. 20. G 주식회사(2015. 3. 27. H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G’이라 한다)와 사이에, G이 원고로부터 매수한 조명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G로부터 리스료 원금을 1,078,000,000원으로, 월 리스료를 48,902,650원으로, 규정손실금을 미회수원금의 101%로 각 정하여 시설대여(리스)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리스료 지급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가 제때 지급되지 않자 G에게 별지1 대납 내역의 ‘A대납액

상환 잔액(대납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866,281,037원의 리스료(이자 및 연체 이자 포함, 이하 '이 사건 리스료'라고 한다)를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소외 B 및 I에 대한 구상금 청구 등

1) 원고는 소외 B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변제자대위에 따라 이 사건 리스료 중 476,167,7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예비적으로 G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리스료 채권 중 476,167,7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7. 1. 19. 원고가 대납한 리스료가 849,972,151원임을 전제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인 양수금 청구를 일부 인용(지연손해금 일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5840). 이에 대하여 소외 B는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7. 12. 13.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변제자대위에 따른 리스료 청구를 일부 인용(지연손해금 일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나2006724). 이에 대하여 소외 B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8. 4. 12. 위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위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다204534, 이하 위 제1, 2, 3심을 통틀어 '소외 B에 대한 선행 사건'이라 한다).

2) 원고는 소외 B의 대주주였던 I을 상대로도 소외 B에 대한 선행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소를 제기하여, 제1, 2심 법원으로부터 소외 B에 대한 선행 사건의 제1, 2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5901,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7561), 그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I 모두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18. 5. 31. 확정되었다(이하 위 제1, 2심을 통틀어 'I에 대한 선행 사건'이라 한다).

3) 나아가, 원고는 소외 B를 상대로, 이 사건 리스료 866,281,037원에서 위 선행 사건에서 인정된 원금인 476,167,751원을 공제한 390,113,286원(= 866,281,037원 - 476,167,7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1차전676), 같은 법원은 2021. 1. 28. 위 신청을 인용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21. 2. 18. 확정되었다.

4) 원고는 2018. 4. 27. I에 대한 선행 사건의 판결에 기하여 I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152,624,014원을 배당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J), 2017. 4. 5. 소외 B의 K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서울동부지방법원 2017타채3409) 2019. 11. 29. 소외 B가 피공탁자인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156,175,643원을 배당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L).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0호증, 을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소외 B에 대한 선행 사건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소외 B에 대하여 변제자대위에 의한 이 사건 리스로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잔존 채권액은 이 사건 리스로 866,281,037원에 선행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변제받은 308,799,657원(= I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152,624,014원 + 소외 B가 피공탁자인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156,175,643원)을 일부 변제충당한 815,221,018원(별지2 변제충당 내역 참조)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나. 피고는 소외 B의 채무면탈이라는 목적을 위해 법인격을 남용하여 형식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므로, 피고가 소외 B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내세워 이 사건 리스로 채권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다. 설령 피고와 소외 B를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이라 볼 수 없더라도, 피고와 소외 B의 인적 구성 및 위 법인들간의 금전 거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는 소외 B의 영업을 묵시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소외 B의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 상법 제42조에 의해 소외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직 변제되지 않은 이 사건 리스로 잔존 채권액 815,221,0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237,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법인격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7327 판결 등 참조).

2) 판 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포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및 이 법원의 M공사 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B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에 불과하여 그 법인격이 부인됨으로써 소외 B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소외 B의 대표자 I과 피고의 대표자 E가 형제라는 사정만으로는 실질적으로 I이 피고를 설립하여 운영해 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피고의 대표자인 E가 D를 상대로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한 당사자 중 한 명인 점, 위 합병무효의 소에서 피고인 D는 소장 부분을 송달 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무변론판결이 선고된 점 등 E가 피고를 설립한 동기 및 경위에 의심할 만한 사정은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는 소외 B가 D에 흡수합병되고 난 이후에 설립되었는데, 원칙적으로 두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소멸회사의 재산이 존속회사에 이전될 뿐만 아니라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도 존속회사에 승계되는 점, E는 소외 B가 D에 흡수합병되었다고 생각하고 피고를 설립하였다가 D가 소외 B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소외 B의 채권자 중 한 명으로서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서 든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B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피고가 설립될 당시 소외 B가 이 사건 리스로 채권을 변제할 수 없을 정도로 경영 상태가 악화되었다거나 자본이 부실하게 되었다는 등 소외 B의 구체적인 경영상태나 자산상황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④ 피고와 소외 B의 각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소외 B의 물적 시설을 승계받은 사실도 없다.

⑤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일부 거래처들이 중복되기는 하나, 동종의 업체들 사이에서는 거래처가 중복되는 것이 반드시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소외 B도 현재 위 중복된 거래처들과 거래를 계속하고 있는 점, 위 중복된 거래처들 중 피고가 소외 B보다 먼저 거래를 시작한 업체들도 있는 점, 피고와 소외 B의 중복된 거래처 중 하나인 M은 입찰을 통해 피고와 물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일부 거래처들이 중복된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B의 영업자산을 그대로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⑥ 소외 B의 직원이었던 N은 2018. 5.경, O은 2018. 6.경 피고로 각 이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N과 O은 피고가 설립된 지 4년 후에서야 비로소 이직하였고, 그것이 N과 O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이직이 아니라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인적 자산의 무상 이전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사실만으로 피고가 소외 B의 인적 자산을 이전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⑦ 그 밖에 피고가 소외 B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자산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소외 B는 현재도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⑧ 피고와 소외 B 사이, 소외 B와 F 사이, 피고와 I 사이에 각 금전 거래가 다수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통상적으로 동종의 업계에서 영업을 하는 회사들 간에는 거래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금전 거래가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가 소외 B의 사업장 소재지의 관리비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B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임차한 사무실을 소외 B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은 가족회사 형태의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운영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사정들만으로는 소외 B가 형해화되어 그 법인격을 부인해야 할 정도로 소외 B와 피고 사이에 심각한 재산의 혼용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묵시적 영업양도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영업양도는 반드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계약에 의하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17130 판결 등 참조).

2) 판 단

원고의 위 주장은 피고가 소외 B의营业을 양도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먼저 그와 같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소외 B의 인적·물적 자산 및 영업자산을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N과 O 외에는 피고와 소외 B의 인적 구성이 중복되지 않고, 소외 B의 감사였던 P이 피고의 대주주인 사실만으로는 피고와 소외 B의 인적 구성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소외 B에서 N과 O의 지위, 역할 및 그 비중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의 거래처들 중에는 소외 B와 중복되지 않은 거래처들도 다수 있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설령 소외 B의 영업재산이 피고에게 일부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양도된 부분만으로도 소외 B의 영업조직이 피고의 영업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묵시적 영업양도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가 소외 B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격을 가진 회사라거나 피고가 소외 B의 영업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 완, 판사 곽새롬, 판사 한성민

별지1

대답 내역

[illegible]

별지2

변제충당 내역

	대법원 판결금액	추가 지급명령 확정금액	합계
	476,167,751	390,113,286	866,281,037 (*)
(*) []/[]에게 총 받아야 할 금액(리스료 대납금액)			
[] 경매대금 수령금액(2018.4.27) - (1)			152,624,014
2018년 4월 27일까지 발생한 이자			
	78,795,979 (주1)	34,201,713 (주2)	112,997,691
(주1) 2015.10.2~2017.12.13(총803일) - 5%			
2017.12.14~2018.4.27(총135일) - 15%			
(주2) 2016.7.26~2018.4.27(총640일) - 5%			
원금차감액(3)	39,626,323		39,626,323
[] 공사대금 수령금액(2019.11.29) - (2)			156,175,643
2018년 4월 28일부터 2019년 11월 29일까지 발생한 이자			
	113,693,204 (주3)	31,048,742 (주4)	144,741,946
(주3) 2018.4.28~2019.11.29(총581일) - 15%			
(주4) 2018.4.28~2019.11.29(총581일) - 5%			
원금차감액(4)	11,433,697		11,433,697
기 수령금액 소계 (1)+(2)			308,799,657
원금차감액 합계(3)+(4)	51,060,019		51,060,019
추가로 청구해야 할 원금	425,107,732	390,113,286	815,221,018

